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내규

제정 2015. 7.31 내규 제295호  
개정 2016. 7.12 내규 제318호  
2017. 4.26 내규 제350호  
2019. 8.21 내규 제415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감사규정 제18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규정에 의하여 임직원이 공익 증진과 서울 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발전을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면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과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를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 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임직원이 공단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면책”이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에 대한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징계책임을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3. 제2호의 “감사규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감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 “시정 또는 개선” 및 제3호 “징계 또는 주의, 경고”사항을 말한다. 다만, 감사규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시정 또는 개선” 중 관련 임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호개정 2016.7.12.)

**제4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단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걸쳐 적용한다.

**제5조(면책 대상자)** 이 내규에 의한 면책은 공단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제6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삭제<2019.8.21.>
  4.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②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임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3. 삭제<2019.8.21.>

4. 삭제<2019.8.21.>

[전문개정 2016.7.12.]

**제7조(면책 제외)**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삭제<2019.8.21.>

2. 삭제<2019.8.21.>

3. 삭제<2019.8.21.>

4.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6.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7.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제8조(면책제도 통지 등)**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를 착수할 때 적극행정 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별표 1)을 실지감사통지서에 기재하여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다만, 감사규정 제12조에 따라 사전 통보 없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7.12.)

**제9조(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의 설치)** 감사결과에 따른 정계처분 대상 임직원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대상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설공단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감사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3인 이내의 외부위원(시민옴부즈만을 포함한다)과 상임감사가 지명하는 팀장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8.21.>

④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대상의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이익 증진과 공단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하자 및 부작용 여부

2.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정책 수립 및 집행, 시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창의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여부

3. 의사결정의 목적·내용 및 과정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었으며, 해당 업무처리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시급성·불가피성 여부

4. 그 밖에 공단의 발전에 이익이 되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여부 등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 ② 위원회는 상임감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구성원의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④ 관련 임직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실 팀장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9.8.21.>

**제14조(면책심사 신청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종료 후 감사활동 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결정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피감사자 또는 피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면책 제외 또는 징계시효 도래 등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면책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신분상 조치요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적극행정 면책심사 신청사유가 제6조의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7조 제1항의 면책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3. 징계시효가 도래하여 조속한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제15조(면책심사 절차)** 감사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검토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자 및 면책심의 대상 임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심의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 ·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결과를 처분할 때에 위원회의 심의 · 의결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면책심사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적극행정 면책신청 및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처분사항을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규정)** 이 내규에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령, 서울시 및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및 일반적인 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2015.7.31.)**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7.12)**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4.26)(정관 제855호)**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이나 내규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용어는 이 정관 개정에 의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9. 8.2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제8조 관련)(신설 2016.7.12.)<개정 2019.8.21.>

## 면책신청 안내

○○○감사를 받은 임직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임직원 본인
  - ※ 감사를 받은 부서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부서의 장

###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별지 제1호 서식]

## 감사결과 조치예정사항 통보서

수신 :

발신 :

소속	직급	성명	비위요지	조치계획	근거법규

[별지 제2호 서식](제14조제2항 관련)<개정 2016.7.12, 2019.8.21.>

## 적극행정 면책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내 용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여부	
나.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4. 기타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내규」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부서명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감사실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제15조 관련)<개정 2016.7.12, 2019.8.21.>

## 적극행정 면책검토서

피 감사 부서명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신분상조치	
비위내용	

구분	신청사유	검토의견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별지 제4호서식]

##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건명					
심사대상자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심사결과					
서울시설공단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간사		○인			

[별지 제5호 서식]

## 적극행정 면책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번호	접수년월일	처분년월일	심사대상자			심사결과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